

품종보호권 취소에 대한 의견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7일	
제출인	성 명		생년월일 (외국인은 국적)		
	주 소		전화번호		
대리인	성 명		생년월일		
	주 소		전화번호		
사건의 표시	품종보호권 등록번호		품종보호권 등록일		
담당 심사관					
작물의 명칭					
품종의 명칭					
취소를 통지 받은 날짜			의견서 제출 마감일		
의견 내용					

「식물신품종 보호법」 제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보호권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(대리인) (서명 또는 인)

산 립 청 장
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
국립수산과학원장

첨부서류	1. 의견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.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(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"제출인"란 및 "작물의 명칭"란과 "품종의 명칭"란은 품종보호 출원서에 적힌 것과 같게 작성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출원 후에 출원인 및 품종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정정된 주소·성명(따로 「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) 및 품종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.
2. "취소를 통지받은 날짜"란 및 "의견서 제출 마감일"란에는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날짜 및 의견서 제출 마감일의 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.
3. "의견 내용"란에는 의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,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4. 그 밖의 사항은 「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, "신고인"을 "제출인"으로, "신고서"를 "의견서"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의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